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제공 및 비용 보조 근거 마련 등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51호)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68호)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80호)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08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698호)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80호)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05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88호)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93호)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21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83호)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44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5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검토 의견	15
1. 노인여가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윤재옥의원안)	15
2. 노인 기준연령의 점진적 상향(주호영의원안)	28
3. 노후시설 보수 등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김재섭의원안·이수진의원안)	40
4. 노인복지주택 서비스의 홈페이지 공개 및 노인복지주택 실태조사(이헌승의원안)	47
5.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실시 주체 확대 (안상훈의원안)	53
6.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지침의 작성·배포 및 인권교육 내용 포함(김정재의원안)	57
7.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제공 및 비용 보조 근거 마련 (김남희의원안)	68
8. 노인실태조사에 노인학대 포함 및 노인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 명시 등(정춘생의원안)	76
9. 대중교통운영자의 이용요금 경로우대 할인 비용 지원 및 경로우대 교통이용권 발급(이준석의원안)	89

1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이성윤의원안)	102
11.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이재정의원안)	108
12.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전진숙의원안)	114

※ 참고 자료

1. 노인복지주택 현황	120
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상세현황(2020~2024)	121
3.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사용 전 필수 절차) ..	122
4.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 신체적 제한에 관한 외국 입법례 및 억제대 사용 현황	123
5. 주요국의 대중교통수단 할인제도 현황	124
6. 법정기념일 현황	125

I. 개요

1.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3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1.

(3) 회 부 일 : 2025. 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2.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3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2. 24.
- (3) 회 부 일 : 2025.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3.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1.
- (3) 회 부 일 : 2025. 3.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 2제3항 및 제4항 신설).

4.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3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4.

(3) 회 부 일 : 2025.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5.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69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10.
- (3) 회 부 일 : 2025. 4.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6.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5. 7.
- (3) 회 부 일 : 2025. 5.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 노인의 보호·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7.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0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5. 8.

(3) 회 부 일 : 2025. 5.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8.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23.
- (3) 회 부 일 : 2025. 5.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사지 결박하고,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욕설을 하는 등 노인 학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9.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10.
- (3) 회 부 일 : 2025.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10.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92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18.
- (3) 회 부 일 : 2025. 6.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7조의5 신설).

1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8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7. 4.
- (3) 회 부 일 : 2025. 7.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12.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4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7. 8.
- (3) 회 부 일 : 2025. 7.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양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는 강한 반면,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은 낮은 상태임.

이에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13.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45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1.

(3) 회 부 일 : 2025. 7.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Ⅱ. 검토 의견

1. 노인여가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윤재옥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범죄 예방 등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신 설>

보관하여야 한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영상정보의 이용 금지 등) ① 제37조의4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7조의4제3항의 영상정보를 이

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열람하
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 예방 및 시설 내 안전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제37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
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③·④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7조의4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기준 또는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2의3. 제37조의5제2항제1호를

<u><신 설></u> <u>2의2. · 2의3.</u> (생략) 3. ~ 6. (생략) 제61조의2(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u><신 설></u> ④ · ⑤ (생략)	<u>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u> <u>2의4. 제37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u> <u>2의5. · 2의6.</u> (현행 제2호의2 및 제2호의3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u>3. 제37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사항

□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노인들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모여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개정안과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겠음.

□ 특히, 60세 이상 노인학대행위자와 61세 이상 범죄행위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경로당에서 발생한 비빔밥 독극물 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으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음.

< 60세 이상 노인학대행위자와 61세 이상 범죄행위자 추이 >

(단위: 명, % / 인구 10만명당 발생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노인학대행위자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7,900
60세 이상	1,562 (40.3%)	1,762 (41.7%)	2,026 (43.7%)	2,190 (42.9%)	2,525 (44.6%)	2,699 (46.7%)	3,144 (46.9%)	3,934 (46.7%)	3,865 (51.6%)	4,088 (51.7%)
범죄행위자 발생비	22,179	22,546	23,507	21,594	20,188	20,348	18,850	15,845	16,005	15,948
61세 이상	1,939 (8.7%)	2,073 (9.2%)	2,215 (9.4%)	2,174 (10.1%)	2,184 (10.8%)	2,340 (11.5%)	2,219 (11.8%)	1,911 (12.1%)	1,828 (11.4%)	1,906 (12.0%)

* 자료: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4 범죄분석」

□ 참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개인정보 보호법」¹⁾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한 종류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 「개인정보 보호법」²⁾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설치·운영이 가능함.

□ 그 외, 도시철도차량, 도시공원 내 주요지점, 사격장 주요지점, 보행자길, 훈련시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³⁾ 내에서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공간에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학대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공간(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현황 >

법률명	설치 장소	설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의료법	수술실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차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주요지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 주요지점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항만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보호구역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차	
초·중등교육법	학교시설	
출입국관리법	보호시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길	
국민체육진흥법	훈련시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센터, 도축장	

- 첫째,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다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각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대한노인회에서는 개인 사생활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남용 및 부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비공개된 장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자체점검 현황 등록

▣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 11호)

▣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경로당(31.4%)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32.1%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기도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개소, 대)

구 분	시설수(A)	설치시설수(B)	설치율(B/A)	설치시설(B)의 평균설치대수
합 계	71,721	23,002	32.1%	9.9
노인복지관	459	453	98.7%	22.5
경로당	70,061	21,973	31.4%	1.5
노인교실	1,201	576	48.0%	5.6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함께, 2024년도 노인복지시설별 노인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은 노인의료복지시설(90.1%)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도 법안 심사시 고려될 필요는 있겠음.

< 2024년도 노인복지시설별 노인학대 발생현황 >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7	1	4	14	9	-	-	35 (3.6)
	노인의료 복지시설	286	100	162	36	284	-	1	869 (90.1)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	-	-	-	-	1
	재가노인 복지시설	10	8	1	8	33	-	-	60 (6.2)
계		303	110	167	58	326	-	1	965

* 자료: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둘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벌칙 수준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 개정안에서는 CCTV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과 유사하게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비공개 장소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규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벌칙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겠고, 정당한 권한 없이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비교 >

위반행위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인정보 보호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상정보를 다른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 없이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멸실한 자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21.12.21.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예산으로 147억원을 편성하여 6,089개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바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토대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드는 추가재정소요를 2026년 총 1,737억 3백만원으로 추계하였음.(2025. 4. 29.)

안 제37조의2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의 사전협의도 필요하겠고, 예산 반영을 고려하여 시행일(공포 후 6개월)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타 시설 등과 달리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간 형평성,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화

보다 지역사정을 고려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재량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 노인여가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여부는 노인의 안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 - 다만, 「노인복지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한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부과되도록 할 필요
기획 재정부	◦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논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 어린이집의 영유아, 신체적·정신적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장기요양기관 거주 노인을 위한 CCTV 설치 의무와는 달리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 자유의지가 있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CCTV 설치 의무화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한국노인 복지관 협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영상정보 보관 기간에 대한 최소 기준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60일 이상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시 월 정기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므로 운영비에 대한 자체의 정기적인 지원 필요 ◦ CCTV 설치 의무를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시설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대한 노인회	◦ 경로당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및 우발 상황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2. 노인 기준연령의 점진적 상향(주호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u>65세</u>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 타. (생략)	제1조의2(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70세</u> ----- ----- ----- -----. 가. ~ 타. (현행과 같음)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u>65세</u>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	제25조(생업지원) ① ----- ----- ----- ----- ----- ----- ----- ----- ----- ----- ----- <u>70세</u> ----- -----

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

-----.

②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경로우대) ① -----

-----.

②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

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

-----70세-----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

-----.

1. 70세-----

2. 70세-----

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70세-----

② -----

-----70
세-----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70세

-----.

1. ~ 16. (생략) ③ ~ ⑥ (생략)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u>65세</u>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의9(금지행위) -----<u>70세</u>----- ----- ----- ----- -----. 1. ~ 6. (현행과 같음)
	< 부 칙 >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그 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연령에 4.5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연령에 4세</u>

를,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3.5세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3세를,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2.5세를,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2세를, 2032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는 1.5세를, 2033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는 1세를, 2034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는 0.5세를 각각 뺀 연령을 적용한다.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⁵⁾의 경로우대 조항을 참고하여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한 실정임.

< 노인 기준연령 관련 법률 현황 >

분야	제도·서비스	기준연령	근거규정	관련법률	비 고
소득·일자리	국민연금 수급 개시	63세	법률	국민연금법	2034년까지 65세로 상향
	기초연금	65세	법률	기초연금법	
	노인일자리	65세	지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는 60세 기준
	정년 및 고령자고용 지원	60세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경로우대자 세액공제	70세	법률	소득세법	
서비스	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법률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	65세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대상
	노인맞춤돌봄	65세	지침	노인복지법	
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	65세	고시	감염병예방법	
	노인외래정액제	65세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치매검사비 지원	60세	지침	치매관리법	
주거·교통	주택연금	55세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고령자 복지주택	65세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75세	법률	도로교통법	

- 5)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상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학대 관련 대상 연령, 우선위탁 등 생업지원 연령, 경로우대 연령, 건강진단 지원 연령, 주거복지시설 등 입소 연령을 각각 70세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노인복지법」 상 65세 규정은 1981년 제정당시의 기대수명이 66.7세였던 점이 반영된 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바, 기대수명 연장 등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향상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겠음.

<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1981~2070년) >

(단위: 세, %,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구 분	1981	1998	2025	2050	2070
기대수명	66.7세	75.1세	84.5세	88.6세	90.9세
65세 이상 비율(A)	3.9%	6.4%	20.3%	40.1%	46.0%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B)	62.8%	71.6%	69.5%	51.9%	47.5%
노년부양비(A/B)	6.2	9.3	29.7	78.6	100.6

* 자료: KOSIS 인구조로 보는 대한민국

□ 참고로,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도 평균 71.6세로 조사된 바 있음.

<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

(단위: 세, %)

71.6세	69세 이하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응답자 평균	20.9%	44.6%	21.4%	13.0%

* 자료: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 다만, 노인학대 관련 연령 조정의 경우 65~69세 노인의 학대 노출 위험성(2024년의 경우 65~69세 학대 피해자는 전체의 25.3%인 1,812명)을 높이고, 학대 재발 우려도 있는 등 연령 상향에 따라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있어 여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고려사항 >

조 문		고 려 사 항
노인 학대 관련	노인학대관련 범죄 대상 연령 (안 제1조의2제5호)	◦ 65~69세 노인 학대 노출 위험성 및 학대 재발 우려 등 ※ 65~69세 학대 피해자는 전체의 25.3%인 1,812명(202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연령 (안 제39조의6)	
	금지행위 피해자 대상 연령 (안 39조의9)	
우선위탁 등 생업지원 관련 (안 제25조)		◦ 65~69세 노인의 일자리 감소 및 사업체의 채용 기피 우려
경로우대 관련 (안 제26조)		◦ 자유로운 이동 제한 및 건강한 여가생활 저해
건강진단 지원 관련 (안 제27조)		◦ 사전 예방적 효과 측면에서 낮은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
주거복지시설 등 입소 관련 (안 제28조)		◦ 65~69세 노인 보호 미흡, 가족 부양 부담 가중

* 자료: 보건복지부

□ 더구나, 금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 대부분 노인복지법의 노인 연령 기준을 참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기 은퇴 이후 소득공백 문제, 노인빈곤 문제, 정년 등 고용제도 문제 등과 연계된 사항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 노인 기준연령 상황에 대한 찬반 입장 >

찬성 입장	반대 입장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반영 ◦ 건강수명·기대수명·생산가능연한 등 신체적 변화 반영 ◦ 생애사적 사건(결혼·출산·환갑 등) 기준연령 상황 ◦ 인구구조(생산가능인구 변화, 활기찬 고령화) 반영 ◦ 복지지출 절감 ◦ 연금·정년 논의에 대한 선언적 의미	◦ 은퇴연령·연금수급개시연령 불일치에 따른 소득 공백 ◦ 노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년제도 (60세) ◦ OECD 최고수준의 노인빈곤·노인자살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호 필요

* 자료: 「특집,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황 논의」(국회보 제688호, 2024. 3.) 등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25년 4월 9일,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였고⁶⁾,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노년·노동 등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청년단체·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노인연령 관련 전문가 간담회」(6회)가 진행되어 민간 전문가들이 2025년 5월 9일 사회적 제안⁷⁾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논의 결과도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개별사업이나 정책마다 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일괄하여 70세로 상향하기 보다는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의 기

6) 「저고위, 노인기준 연령 관련 범부처 논의 착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 4. 9.)

7) (사회적 제안 주요 내용) ▲노인 연령 기준 70세까지 단계적 상향 및 지속적 재검토·조정, ▲노인의 고용 연장 및 고용기회 확대, ▲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단계적 상향, ▲경로우대 제도의 연령 기준 상향하되 소득 등 고려 유연하게 적용, ▲필요에 따른 의료·요양 서비스 보장

본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기준연령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외, 개정안 부칙 제2조(연령에 관한 적용례)는 0.5세씩 상향하고 있는데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도록 기술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5623호, 1998. 12. 31.>⁸⁾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마다 1세씩 더한 연령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 기대수명·건강상태 개선,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인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연령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 축소, 노인빈곤율 가중, 정년 후 소득공백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괄적인 연령 상향보다는 개별적인 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연령 기준, 지원 범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제3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원칙)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 ▲기대수명·건강상태 개선,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인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 △노인복지 축소, △노인빈곤율 가중, △정년 후 소득공백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 (내용) 노인 연령 조정 시에도 일괄상향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조정 필요성과 조정 수준의 적절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 노인학대예방·대응, 시설 입소 등은 노인 인권보호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특히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노인학대피해자 중 65~69세 1,812명(25.3%),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65~69세 45,004명(6.1%)(‘24년 기준) 등 ◦ (방식) 1년마다 0.5세씩 연령을 조정하는 방식은 0.5세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 인권 사각지대 고려하여 노인학대 관련 연령 상향은 신중할 필요 - 노인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돌봄 취약계층 학대 발생 등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노인학대 기준연령 상향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입 등 법적 근거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대한 노인회	◦ 노인복지법상 지원대상 연령 현행(65세) 유지 필요 ◦ 다만, 노인 부양부담 증가를 고려해 노인 연령을 75세로 정의하는 규정 신설하되, 부칙을 통해 2035년까지 1년마다 1세씩 점진적 상향

3. 노후시설 보수 등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김재섭의원안·이수진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2건의 개정안은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등 경로당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	김재섭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② (생략) <u><신설></u>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에</u>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u>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u>
---------------------------	---	---

나. 주요 검토사항

-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6만 9천여 개소)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 독거노인 비율과 경로당 이용 이유 >

(단위: %)

연도	독거노인 비율	경로당 이용 이유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017	19.0	91.4	57.2	8.3	9.0	0.3	0.6	1.5	0.6
2020	19.8	82.9	62.5	19.0	11.0	2.3	1.6	1.3	0.2
2023	21.8	66.2	19.2	3.4	4.6	0.4	1.0	0.9	4.3

* 2017·2020년은 복수응답, 2023년은 단일응답

* 자료: 「장래인구추계」, 「노인 실태조사」

- 경로당에 대한 국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비로 지원('25년 875억원)하고 있으며, 그 외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경로당의 부식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25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200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62.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12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로당의 42%에 해당하는 28,933개소가 개설된 지 2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로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경로당 노후화 현황 >

(기준: 2025. 3. 31. / 단위: 개소, %)

구 분	25년 이상	15~24년	5~14년	4년 이하	합 계
경로당 수	28,933 (42.0%)	20,189 (29.3%)	17,158 (24.9%)	2,656 (3.9%)	68,936

*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지방비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5년의 경우 신축비를 포함하여 총 1,779억 4,800만원이 지원되는 바, 현장에서는 경로당 증가 및 노후화로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대구시 동구).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현황 >

(’25. 3월 기준 / 단위 : 백만원)

합계	신축비			증개축비			환경개선 등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기초
177,948	71,891	6,804	65,087	22,772	1,195	21,577	83,285	9,141	74,145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현실에서 2건의 개정안과 같이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경로당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무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있어야 하겠음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9) 개정안과 관련하여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 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37조의2제4항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지원 대상·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로당의 수와 지원 내용, 지원 단가 등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2건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경로당 시설비 등 환경개선에 대한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이양사업(2005년~)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국비 지원은 불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하므로 관계부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타 지방이양사업 간의 형평성,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연계한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비 지원(2025년 1,031억원)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경로당 시설비 등 환경개선에 대한 '경로당 운영 지원'은 지방이양사업('05년~)으로 「보조금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하므로 재정당국과 논의하는게 바람직함 - 또한 타 지방이양사업과의 형평성,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연계한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상황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기획 재정부	◦ 경로당 운영 사업은 '05년 지방이양된 점 감안 신중 검토 필요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81. 경로당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대구시 동구	◦ 지자체별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증가 및 노후화로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시설 유지 보수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4. 노인복지주택 서비스의 홈페이지 공개 및 노인복지주택 실태조사(이헌승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등) ① ~ ⑨ (생략)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⑩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33조의4(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u>

제61조의2(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⑤ (생략)	<u>다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3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사항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¹⁰⁾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분양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시설임.(「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 노인복지주택 운영 현황 >

- (운영현황) 12개 시·도, 43개 시설, 총 9,231세대('24년 말 기준) <참고자료1>
 - 분양형 3,735세대, 임대형 3,560세대, 혼합형 1,936세대 (*분양 1,086 임대 850)
 -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함.
- 입소 대상 및 서비스
 - (입소대상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입소자격자가 부양 책임 있는 24세 미만 자녀·손자녀
 - (제공 서비스) 운영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우리부는 시설기준, 최소한의 운영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시설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식사, 가사·청소, 목욕탕·운동시설, 건강관리(간호사 상주 혹은 의료기관 1:1 연계), 응급관리* 등 제공
 - * 시설 내 CCTV, 각 실별 비상콜 버튼, 이송체계 운영 등
- 주요 연혁
 - (임대형 도입)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형으로 도입('89.12월)
 - (분양형 도입) 민간기업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도입되어 분양 허용('98.5.23)
 - 입소자 조사 거부시 과태료, 미자격자 이행강제금 도입('08.8.4)
 - (분양형 폐지 등) 불법적인 분양·양도·입소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15.7.29)

* 자료: 보건복지부

10)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노인주거복지시설의운영기준은 각종 복리시설 운영 및 생활지도·상담, 긴급사태시 대처 등 서비스 제공을 노인복지주택의 사업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사업내용 >

-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나)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생활지도·상담
 - ② 문안
 - ③ 긴급사태시 대처
 - ④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자료: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운영기준[제17조제2항관련](노인복지법시행규칙)

- 하지만, 2025년 4월말 기준 노인복지주택 전국 40개 시설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제공서비스를 공개하는 시설은 15개소에 불과하여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품질·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안 제33조의4(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등)와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전체 노인주거복지시설 297개소 중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13.5%)에 불과한 점, 노인실태조사 외에는 사회적 중요성이 큰 치매실태조사, 장기요양실태조사만 개별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 노인복지 관련 실태조사 법규 >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u>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u>
치매실태조사
「치매관리법」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3년 주기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5,800만원)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1,600만원(연평균 2,300만원)을 추계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의 소비자(입소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노인실태조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실태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5.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주체 확대

(안상훈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생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u>다음 각 호의 기관의</u>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u>기관·시설</u> <u>등의</u> ----- ----- ----- <u>실</u> <u>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u> <u>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u> ----- -----.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삭 제>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삭 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삭 제>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등 4개 유형의 기관의 장만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¹⁾. 이에 따라, 현행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의 신고의무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2024년도 학대발생장소별 노인학대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포함),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의 비율이 9.9%를 차지함.

< 2024년도 학대발생장소별 노인학대 현황 >

(단위: 건)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6,323	566	29	1	51	61	5	61	70	7,167
88.2	7.9	0.4	0.0	0.7	0.9	0.1	0.9	1.0	100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현행과 같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일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한정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참고자료2>), 개정안과 같이 모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신규 제도 수용성 강화 등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도 부여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노인학대 발생 현황 (2020~2024년) >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259	6,774	6,807	7,025	7,167

- 참고로, 관련 입법례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장애인복지법」(제 59조의4)에서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입법례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u>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u> 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u>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u> 하여야 한다.	제 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u>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u> 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u>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u> 하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3,500만원(연평균 2,700만원)을 추계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에게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 신고체계가 강화되어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6.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지침의 작성·배포 및 인권교육 내용 포함(김정재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지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6조의3(인권교육) ① ----- ----- ----- ----- ----- --. 이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제35조 제5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신 설>

④ (생략)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이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자
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현저하게 위험한 경우에 한하
여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적 제한은 입소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
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작성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illegible]

조제6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	-----
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4년 기준, 6,195개소 206,996명이 입소하였음.

< 2024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단위: 개, 명)

구 분	시설	입소자	
		정원	현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4,640	236,365	194,43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1,555	14,533	12,558
합 계	6,195	250,898	206,996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 방지, 의료장치 유지 목적(L-Tube, 소변줄, 비위관 등), 신체 가려움으로 인한 피부 손상 예방, 대변 만짐 등 비위생 행동 방지,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 예방(손목억제대, 손장갑, 휠체어 안전벨트, 침대사이드레일 등)을 위하여 2024년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6,217개소 중 3,764개소가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신체억제대 사용 현황 >

(기준: 2024. 12. 31./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시설	5,543	5,762	5,988	6,150	6,269	6,217
사용 시설	1,967	2,157	2,352	2,623	2,930	3,764

* '사용 시설수'는 1회 이상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시설, 지자체 취합

* 자료: 보건복지부

□ 그리고, 2024년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566건 중 ‘장시간 신체억제대 사용’ 등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신체적 학대로 판정된 것은 109건임.

< 노인학대 발생장소 현황(2020~2024) >

(단위: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 내	5,505 (88.0)	5,962 (88.0)	5,867 (86.2)	6,079 (86.5)	6,323 (88.2)
생활복지시설	521 (8.3)	536 (7.9)	662 (9.7)	571 (8.1)	571 (8.1)
의료복지시설	483 (7.7)	497 (7.3)	579 (8.5)	537 (7.6)	566 (7.9)
주거복지시설	38 (0.6)	39 (0.6)	83 (1.2)	34 (0.5)	29 (0.4)
이용시설	92 (1.5)	87 (1.3)	52 (0.8)	108 (1.5)	52 (1.7)
병원	37 (0.6)	62 (0.9)	86 (1.3)	115 (1.6)	66 (1.0)
공공장소	39 (0.6)	54 (0.8)	51 (0.7)	64 (0.9)	61 (0.9)
기타	65 (1.0)	73 (1.1)	89 (1.3)	88 (1.3)	70 (1.0)
합 계	6,259	6,774	6,807	7,025	7,167

* 자료: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 현황 >

(단위 : 건)

학대 판정지표	세부지표	학대로 판정된 건수				
		2020	2021	2022	2023	2024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	54	44	80	39	78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	11	12	13	16	25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다	2	2	20	2	6
계		67	58	113	57	109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에 억제대(벨트, 조끼, 장갑 등)를 사용한다,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 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 전신 억제대를 사용한다,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한다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환자의 손을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¹²⁾”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2014.8.28.)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¹³⁾”(2022.8.2.)를 한 바 있음.
- 보건복지부도 법률 형식은 아니지만, 201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신체적 제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지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시행 2014.7.1.)

12)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13)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간 등 돌봄인력 부족으로 신체억제대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도 함께 권고하였음.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¹⁴⁾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으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지침 작성·배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입소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신체억제대의 사용 등 신체적 제한 문제는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 사안인 만큼, 사용 요건, 절차, 신체억제대 사용 의

14)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경기도 인권센터, 2024)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중 신체 구속 관련 지침이 있는 곳은 200개소 중 130개소(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돌봄 강화를 위한 대안적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대안적 방안 연구」(2025.2.~2025.11.)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연구결과도 개정안 심사 과정에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 제35조제4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입소 노인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현저하게 위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이 오히려 신체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와 같이 원칙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또한,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보호·안전과 시설 종사자의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체억제대 사용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사전에 전문의의 판단과 함께 입소 노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신체적 제한 관련 입법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별표 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의료법 시행규칙)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 다만, 전문의의 사전판단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¹⁵⁾과 달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복지시설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은 의사·계약의사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명 이상)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의사는 노인요양시설에 상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전문의의 판단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이상)	◦ 1명 이상: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 1명: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 없음

- 셋째, 개정안 제35조제5항은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04호)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신체 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체적 제한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과 그 개념, 사용요건, 절차, 대안적 방안 등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기관 등 입장 >

보건 복지부	◦ 인권교육의 내용에 신체 제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 - 인권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 내용에 신체 제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음 ◦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신체 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 - 다만, 신체억제대의 사용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과 그 개념, 사용요건, 절차, 대안적 방안 등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중양노인 보호전문 기관	◦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신체적 제한은 노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권적 행위로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로 대안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의 선행이 필요
한국 노인복지 중앙회	◦ 제35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안은 해당 조문 성격에 맞지 않음 - 또한, 신체적 제한과 관련된 사항의 입법은 국민, 서비스 제공현장, 정부 등과 함께 심도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

7.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제공 및 비용 보조 근거 마련 (김남희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 ----- -----.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u>소득보장·재가복지</u> ,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 ----- ----- ----- <u>소득보장·재가복지</u> , <u>급식 등</u> ----- -----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2. ----- ----- ----- -----

수 있도록 하는 <u>장소</u> 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u>장소 및 급식</u> -----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기 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u>학습프 로그램</u> 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 ----- ----- ----- ----- <u>학습프로 그램 및 급식</u> ----- -----
② (생 략)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의2(<u>경로당</u> 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경로당</u> 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u>양곡</u> (「양 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 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의2(<u>노인여가복지시설</u> 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 <u>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에</u> ----- ----- <u>양곡</u>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 다) 및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u>연료비의</u>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경로당</u> 의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 <u>제36조제1항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u> -- ----- -----.

나. 주요 검토사항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2025년 5월말 기준, 노인복지관 455개소, 경로당 69,384개소, 노인교실 1,062개소 등 총 70,90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21~2025) >

(기준: 2025. 5. 31. / 단위: 개소)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
노인여가복지시설	68,823	69,786	70,455	70,935	70,901
노인복지관	357	366	438	454	455
경로당	67,211	68,180	68,792	69,260	69,384
노인교실	1,255	1,240	1,225	1,221	1,062

* 자료: 보건복지부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과 이용 이유 중 “식사서비스 이용” 비율 >

구 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용률	9.6%	26.5%	1.7%
이용 이유 중 “식사서비스 이용” 비율	9.0%	19.2%	2.2%

* 노인교실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¹⁶⁾, 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복지회관 등에 부속설치된 경우가 많음.

* 자료: 「2023년 노인 실태조사」

16) 노인교실 사업내용(「202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1) 주 1회 이상 교육 실시
- 2) 교육 프로그램 분야

구 분	프로그램(예시)
취미·여가	각종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	체조, 요가, 단전호흡, 건강관리 등
교양	한글, 외국어, 컴퓨터, 교양강좌 등
사회참여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5월말 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 70,901개소 중 61,889개소(87.3%)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식당 및 조리실’¹⁷⁾을 갖추고 경로식당¹⁸⁾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89.2%)과 양곡비가 지원되는 경로당(88.6%)이 식사를 주로 제공함. 하지만, ‘주 7일 중 식사 제공 횟수’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 식사 제공 현황 >

(기준: 2025. 5. 31. 기준 / 단위: 개소, 회, %)

구 분	시설 수	식사 제공	주 7일 중 식사 제공 횟수	
			평 균	지역별 편차
노인여가복지시설	70,901	61,889 (87.3%)	—	—
노인복지관	455	406 (89.2%)	5.0	3.4회(경남) ~ 5.4회(광주)
경로당	69,384	61,483 (88.6%)	3.5	3.1회(경북) ~ 4.4회(광주) * 제주: 1.1회
노인교실	1,062	—	—	

*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 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2024. 12. 20.)은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¹⁹⁾.

17)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시설기준

구 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면회실	집회실/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교실	1					1					1	1

18) 노인교실 프로그램(예시) (『202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Ⅲ. 건강생활 지원

8.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 하지만,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개소당 예산집행액은 연간 8,200만원 ~3억 9,100만원으로 운영비용 부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도 국가가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2024년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지역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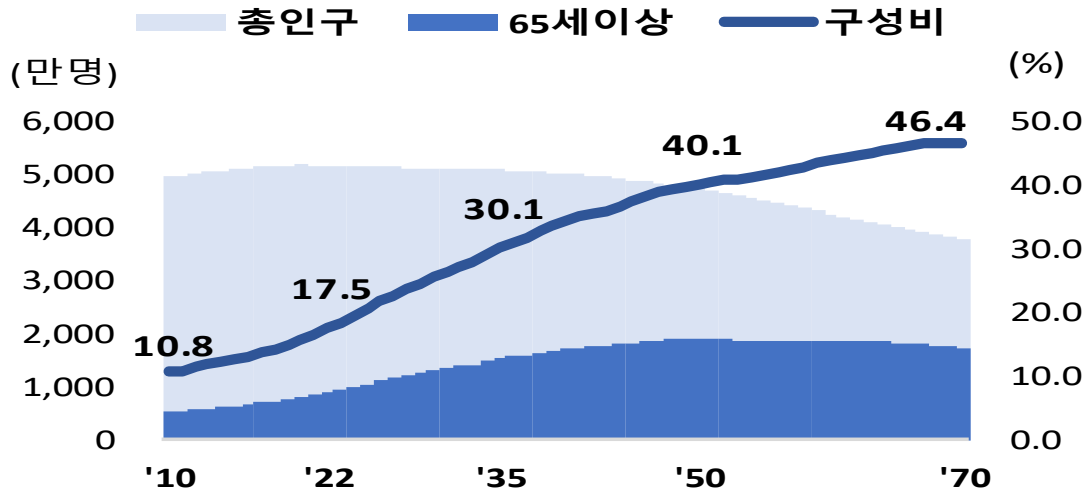
구 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구 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집행액 (A)	수 (B)	개소당 (A/B)		집행액 (A)	수 (B)	개소당 (A/B)
합 계	62,668	406	154	경기	18,348	71	258
서울	7,828	68	115	강원	3,229	17	190
부산	3,479	29	120	충북	2,716	25	109
대구	2,282	21	109	충남	1,564	19	82
인천	2,386	24	99	전북	3,772	30	126
광주	3,520	9	391	전남	4,587	30	153
대전	1,140	10	114	경북	2,389	17	141
울산	2,695	14	193	경남	2,465	20	123
세종	—	—	—	제주	266	2	133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로 하여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19)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4. 12. 20.>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노인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있어야 하겠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 90. 노인시설 운영
-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 그 외, 노인교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시설기준: 사무실1, 화장실1, 강의실1, 휴게실1)로 면적이 협소하여, 식사제공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대구시)의 의견도 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5월말 기준 노인교실(1,062개소) 중 846개소(79.7%)가 면적이 협소하여 식사제공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노인교실 식당공간 확보 가능 여부 >

(기준: 2025. 5. 31. 기준 / 단위: 명, 개소, %)

평균 이용 정원	사용면적 ²⁰⁾				식당공간 확보 가능 여부		
	합계	33㎡	33㎡~ 132㎡	132㎡ 이상	합계	가능	불가능
131	1,062	146 (13.7%)	257 (24.2%)	659 (62.1%)	1,062	216 (20.3%)	846 (79.7%)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급식’을 명시하는 개정안 제36조는 각 시설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시설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3. 설비기준

시설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식사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 ◦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급식'을 명시하는 개정안 제36조는 각 시설의 목적과 취자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시설(노인교실) 운영은 지방이양 사업('05년)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추가 개정 필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식사 제공 확대('24.12월 기준 주3.5회 → 주5회) 추진 중 * 개정 노인복지법('24.12.20. 개정, '26.1.1. 시행) 제37조의2 부식비 지원 -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통한 노인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05년) - (노인교실) 교육시설로 시설 여건(사무실·회장실·강의실·휴게실) 상 급식 제공에는 한계 ◦ 또한, 취사용 연료비와 냉난방비는 각 시설에 국비 또는 지방비로 기 지원 중
기획 재정부	◦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시설 운영 등은 '05년 재원(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과 함께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다시 국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 취지 등에 역행함. - 노인은 입지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운영방식·활성화 수준이 다양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 안전부	◦ 국가시책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시설 전반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함. ※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제81호 삭제가 필요함.
대구시	◦ 노인교실은 종교단체, 개인 등 영세한 시설이 많은 상황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급식제공에는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의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시설 여건상 어려운 상황으로, 개정안에서 노인교실 급식제공 명시 조항은 재검토 필요
대구시 동구	◦ 경로당 급식 제공 목적 명시는 식품위생법 상의 집단급식소 해당의 경우 기준 충족의 어려움(조리사, 영양사 배치, 수질검사, 위생교육 등)이 있으므로, 안 제36조의 개정 조항의 재검토 필요
경기도 양주시	◦ 경로당의 경우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최소 20m² 이상으로 협소하며, 개정안과 같이 급식활동에 중점을 두면 경로당의 고유기능 상실의 우려되므로, 기존과 같이 경로당의 고유기능(친목도모, 여가생활 등)을 유지하며 운영할 필요
한국 노인 종합 복지관 협회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양곡 및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지원에 동의, 시설유형 간 불균형 및 급식에 대한 지역별 차별 요소 해소와 노인의 영양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구체화 필요 - 각 시설유형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 시설별 특성 및 설차운영 상황 등(노인교실의 예)과 지원대상의 신규 발굴 및 확대 등 지원재원의 변경(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의 예, 지방비 → 국비+지방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
대한 영양사 협회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함. 아울러,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도 필요함.

8. 노인실태조사에 노인학대 포함 및 노인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 명시 등(정춘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노인실태조사에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의 요건을 명시하며, 노인학대에 보다 강화된 형사처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생략)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u>
<u>②·③ (생략)</u>	<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u><신설></u>	<u>제39조의22(신체억제대 사용)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5조의2(벌칙) <u>제39조의9제1호</u> (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 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 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u> ②·③ (생략)	② <u>신체억제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u> 1. <u>노인의 자해 또는 타해의 우 려가 명백한 경우</u> 2. <u>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억 제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u>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 를 받은 경우</u> ③ <u>신체억제대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55조의2(벌칙) <u>제39조의9제1호</u> <u>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u> <u>제6호</u>----- ----- -----. 제55조의3(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4년 기준, 6,195개소 206,996명이 입소하였음.

< 2024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단위: 개, 명)

구 분	시설	입소자	
		정원	현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4,640	236,365	194,43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1,555	14,533	12,558
합 계	6,195	250,898	206,996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 방지, 의료장치 유지 목적(L-Tube, 소변줄, 비위관 등), 신체 가려움으로 인한 피부 손상 예방, 대변 만짐 등 비위생 행동 방지,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 예방(손목억제대, 손장갑, 휠체어 안전벨트, 침대사이드레일 등)을 위하여 2024년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6,217개소 중 3,764개소가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신체억제대 사용 현황 >

(기준: 2024. 12. 31./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시설	5,543	5,762	5,988	6,150	6,269	6,217
사용 시설	1,967	2,157	2,352	2,623	2,930	3,764

* '사용 시설수'는 1회 이상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시설, 지자체 취합

* 자료: 보건복지부

□ 그리고, 2024년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566건 중 ‘장시간 신체억제대 사용’ 등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신체적 학대로 판정된 것은 109건임.

< 노인학대 발생장소 현황(2020~2024) >

(단위: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 내	5,505 (88.0)	5,962 (88.0)	5,867 (86.2)	6,079 (86.5)	6,323 (88.2)
생활복지시설	521 (8.3)	536 (7.9)	662 (9.7)	571 (8.1)	571 (8.1)
의료복지시설	483 (7.7)	497 (7.3)	579 (8.5)	537 (7.6)	566 (7.9)
주거복지시설	38 (0.6)	39 (0.6)	83 (1.2)	34 (0.5)	29 (0.4)
이용시설	92 (1.5)	87 (1.3)	52 (0.8)	108 (1.5)	52 (1.7)
병원	37 (0.6)	62 (0.9)	86 (1.3)	115 (1.6)	66 (1.0)
공공장소	39 (0.6)	54 (0.8)	51 (0.7)	64 (0.9)	61 (0.9)
기타	65 (1.0)	73 (1.1)	89 (1.3)	88 (1.3)	70 (1.0)
합 계	6,259	6,774	6,807	7,025	7,167

* 자료: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 현황 >

(단위 : 건)

학대 판정지표	세부지표	학대로 판정된 건수				
		2020	2021	2022	2023	2024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	54	44	80	39	78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	11	12	13	16	25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다	2	2	20	2	6
계		67	58	113	57	109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에 억제대(벨트, 조끼, 장갑 등)를 사용한다,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 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 전신 억제대를 사용한다,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한다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환자의 손을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²¹⁾”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2014.8.28.)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²²⁾”(2022.8.2.)를 한 바 있음.
- 보건복지부도 법률 형식은 아니지만, 201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신체적 제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지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시행 2014.7.1.)

2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22)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간 등 돌봄인력 부족으로 신체억제대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도 함께 권고하였음.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의 엄격한 요건(명백한 자해·타해의 우려, 의사의 판단, 노인·보호자의 동의)을 명시하며, 노인학대행위에 보다 강화된 형사처벌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 관련 입법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별표 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의료법 시행규칙)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 먼저, 노인실태조사에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에 따라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의무적으로 공표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는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구구성, 경제상태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노인학대 실태조사 관련 법규 >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개정 취지는 노인학대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노인실태조사 내용에 노인학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학대 경험, 학대 유형별 행위자, 학대 경험 시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인실태조사 내용에 노인학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외, 「노인

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²³⁾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다음,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것임. 첫째, 신체억제대의 사용 등 신체적 제한 문제는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 사안인 만큼, 사용 요건, 절차, 신체억제대 사용 외 돌봄 강화를 위한 대안적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대안적 방안 연구」(2025.2.~2025.11.)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연구결과도 개정안 심사 과정에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서는 신체억제대 사용 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억제대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제39조의22제2항)에서는 ‘노인의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억제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체억제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체억제대 사용은 노인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인 만큼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의사의 판단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²⁴⁾과 달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복지

23)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2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

시설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은 의사·계약의사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명 이상)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의사는 노인요양시설에 상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전문의의 판단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현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이상)	◦ 1명 이상: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 1명: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 없음

□ 그 외, 개정안(제38조의22제1항)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도 있겠음.

□ 다음, 노인학대 범죄의 형사처벌의 강화와 관련된 것임. 현행법 제39조의9에서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39조의9)상 금지행위 >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임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이들 금지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그 벌칙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 신체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및 성희롱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의 목적외 사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들 금지행위 모두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처벌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금지행위의 경중과 벌칙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겠음.

<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입법례 비교 >

구 분	형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상해	7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적 학대)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희롱·성폭력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유기·방임	(유기)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구걸 강요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로,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04호)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실태조사에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인학대 실태를 통해 학대 예방 정책 마련 등 입법 취지에 공감 하나 별도 조항 신설보다는 기존 실태조사에 추가 반영하여 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하여,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신체 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체적 제한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과 그 개념, 사용요건, 절차, 대안적 방안 등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 입장 >

중양노인 보호전문 기관	◦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신체 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 - 다만, 신체억제대의 사용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과 그 개념, 사용요건, 절차, 대안적 방안 등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중양노인 보호전문 기관	◦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하는 개정안에 공감 ◦ 신체적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마련에 앞서 신체제한의 대안*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문인력 배치, 케어기술 개발 및 교육강화 등 ◦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격리나 묶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모호하여 현장 혼란 등이 우려됨
한국 노인복지 중앙회	◦ 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보호·안전 목적상 신체를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 - 개정안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 시 긴급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낙상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억제대 사용은 허용되지 않아 노인안전예방 측면에서 미흡하며 제한적임 - 이는 신체억제대 관련 고시와 사업안내에서 요구하는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의 절박성·비대체성·일시성 등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나, ·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추후 안전사고, 법률분쟁 등을 초래할 우려있음
한국노인 장기요양 기관협회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에 대한 신체·가사활동 지원시설로 대부분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자해 또는 타해 위험 시 의사의 판단을 전제요건으로 하면 피해 예방이 어려울 수 있음 ◦ 생명유지장치 등 의료적 처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까지 의사소견을 의무화하는 것은 돌봄기관에 맞지 않는 기준 적용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단서 추가 필요)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생명유지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의료적 목적인 경우에 한하며, 신체 억제대 사용 전 또는 사용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9. 대중교통운영자의 이용요금 경로우대 할인 비용 지원 및 경로우대 교통이용권 발급(이준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경로우대)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6조(경로우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65세 이상인 자가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요금을 할인</u>

<신 설>

법률 제2050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2050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3(교통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카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를 말한다)를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권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
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통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교통
이용권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교통이용권의 신청,
발급,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사항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6조의3 신설), 노선버스·여객선 등 대중교통운영자²⁵⁾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제4항 및 제5항)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²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²⁷⁾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서 철도와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6)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7)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할인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9. (생략)	

□ 하지만, 노선버스·여객선·도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경로우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도별 대중교통수단 경로우대(이용요금 할인) 현황 >

(기준: 2025. 6. 30.)

시도	대중교통수단	실시 기초지자체	경로우대	대상자
서울	도시철도	전체	무료	65세 이상
부산	도시철도	전체	무료	65세 이상
대구	도시철도	전체	무료	67세 이상
	노선버스(시내)	전체	무료	73세 이상
인천	도시철도	전체	무료	65세 이상
광주	도시철도	전체	무료	65세 이상
	노선버스(시내·마을)	전체	60회/월	70세 이상
대전	도시철도	전체	무료	65세 이상
	노선버스(시내)	전체	무료	70세 이상
울산	노선버스(시내·마을)	전체	80회/월	75세 이상
경기	노선버스(시내)	안성·여주	80회/월	65세/70세 이상
강원	노선버스 (시내·마을·농어촌)	원주·강릉·속초·삼척· 횡성·정선·인제	무료 / 10~30회/월	65세/70세 이상
충남	노선버스(시내·농어촌)	전체	무료	65세/70세/75세 이상
	여객선	전체	무료	75세 이상
전북	노선버스(시내)	남원	무료	70세 이상
	노선버스(농어촌)	진안	24회/월	65세 이상
전남	노선버스(시내)	광양	무료	65세 이상
	노선버스(농어촌)	영광	무료	65세 이상
경북	노선버스(시내·마을)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 영천·경산·영양·영덕·청도· 고령·성주·칠곡·예천·울릉	무료	65세/70세/73세 이상
	도시철도	김천·구미·영천·청도· 고령·성주·칠곡	무료	70세 이상
경남	노선버스 (시내·마을·농어촌)	전체	무료	75세 이상
		거제·하동·산청·거창	무료	65세/70세 이상
	여객선·도선	전체	무료	75세 이상
제주	노선버스(시내·마을)	전체	무료	65세 이상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같이 교통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 및 도시철도 외에 노선버스,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해서도 이용요금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경우 도시철도 등이 없어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의 상대적 불평등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할인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 마련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시도별 60대 이상 대중교통 주이용수단 현황 >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하철	67	50	50	42	14	21	0	0	38	1	0	1	0	0	2	2	0
버스	33	50	50	58	86	79	100	100	62	99	100	99	100	100	98	98	100

* 자료: 「대중교통 현황조사」(2021), 한국교통안전공단

□ 첫째, 개정안은 교통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용요금 할인 대상 대중교통 종류도 확대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수단에서 사용가능한 교통이용권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요금 할인 대신 정액 교통이용권을 발급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²⁸⁾ 대상 연령이나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28)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1990.1.)가 노인교통수당(현금지급제도)로 전환(1996.1.)되었다가, 기초노령연금 도입(2008.1.)으로 2009년부터 노인교통수당이 폐지된 바 있음(「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시도별 대중교통수단 교통이용권(교통카드) 사업 현황 >

(기준: 2025. 6. 30.)

시 도	실시 기초지자체	대중교통수단	지원액	대상자
서울	강남구	노선버스(시내·마을)	6만원/분기	65세 이상
	종구	노선버스(시내·마을) ※ 택시 지원	4만원/월	65세 이상
	종로구	노선버스(시내·마을)	24만원/연	65세 이상
세종	전체	노선버스(시내·시외·마을), 도시철도	5만원/월	70세 이상
경기	연천군	노선버스 (시내·마을·농어촌)	5만원/분기	65세 이상
	화성시·의왕시	노선버스(시내·마을)	20~157만원/연	65세 이상
	남양주시· 광명시·포천시	노선버스(시내·마을)	3~5만원/분기	65세 이상
	과천시	노선버스(시내·마을)	10만원/월	65세 이상
	안산시	노선버스(시내)	4만원/분기	65세 이상
	구리시	노선버스(마을·시외)	3만원/월	65세 이상
	안양시·하남시	노선버스(시내·마을)	16만원/연	70세 이상
	성남시·평택시·군포시	노선버스(시내·마을)	4~6만원/분기	70세 이상
	이천시	노선버스(시외)	36만원/연 (운전면허 보유시 24만원)	70세 이상
강원	춘천시	노선버스(시내·마을)	3만원/월	65세 이상

*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 반납을 조건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²⁹⁾인 상황에서 노인의 외부활동 촉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등 노인의 이동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있는 가운데, 교통이용권 제도 도입으로 현재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복지 수준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노인 이동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통이용권의 적정 이용한도를 중심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9) 2024년 기준, 처분가능소득(공적이전지출과 이전소득이 반영) 기준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9%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37.6%, 2022년 38.1%, 2023년 38.3%로 매년 악화되고 있음.

- 아울러 교통이용권 제도 도입 등 노인 이동 지원 문제는 노인 연령 상향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도 있어 보임.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무료는 1984년 6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이용요금 할인 대상 대중교통 종류도 확대하면서 교통이용권 도입도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한 바 그 취지는 교통이용권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나, 개정안의 2가지 내용이 각각의 조를 달리하면서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임.
- 둘째,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 노인 등 특정 대상에게 할인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공익 서비스(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고령화로 노인의 무임승차 인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 및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인원 추이 >

(단위: 천명, 배)

구 분	2021	2022	2023
65세 이상 인구(A)	8,570	8,981	9,436
노인 무임승차 인원(B)	315,423	369,082	417,289
B/A	36.8	41.1	44.2

* 주: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중복 이용자를 제거하지 않은 수치로 연간 이용 횟수와 동일 의미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공표통계)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2023 철도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특히, 무임승차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³⁰⁾ 등에 따라 KTX, 수도권전철 등 철도에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이며, 2024년 2,296억 9,100만원임), 도시철도³¹⁾(지하철)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등에 관련규정이 없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자를 실제 규율하는 법률에서 지원규정을 마련·보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익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31)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량전철(주), 용인 경량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남서울경전철(주)

< 2025년도 대중교통수단 할인 사업(공적 서비스 의무)과 지원 법적 근거 >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할인(노인·장애인·학생 등)
「PSO보상」 세부사업 3,622억 7,700만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노선버스 할인(벽지노선)
「벽지노선 지원」 세부사업 375억 4,2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여객선·도선 할인(도서지역)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지자체)」 세부사업 160억 100만원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연평균 9,205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6~2030년) >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노인 운임 감면 운송사업자 지원 (안 제26조)	8,043	8,634	9,256	9,768	10,323	46,025	9,205

* 주: 본 추계는 운송사업자 중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노인 무료 운임 비용을 지원할 때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전체 운송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 외, 개정안 제26조의3(교통이용권의 발급 등) 제4항에서는 교통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교통이용권 회수와 교통이용권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사업법」은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점³²⁾ 등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여객선·도선 운송사업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70호), 도시철도 운송사업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66호), 경로우대 등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68호)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비수도권·중소도시 거주 어르신들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향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행법으로도 노선버스 등 경로우대 혜택과 요금할인에

32)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며, 도시철도· 시내버스 운영 등은 지자체 자치사무로 국비 지원시 상당한 예산 소요가 전망되어 재정당국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대중교통이 취약한 비수도권중소도시 거주 어르신들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향상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근거해서도 노선버스 등에 대해서 경로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요금 할인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입법의 실익이 없음 - 실제로 다수 지자체에서 교통카드를 활용해 경로우대 시행* 중 ◦ 또한, 도시철도· 시내버스의 운영 등은 지자체 자치사무이며, 국비 지원시 상당한 예산 소요* 전망되어 재정당국의 의견을 들을 필요
국토 교통부 (도시철도 관련)	◦ 도시철도법 제31조에 따라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무임수송 시행여부 및 운임 등은 운영주체인 지자체 결정사항임 ◦ 이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역별 교통여건 및 고령화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제도(PSO)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
서울시	◦ 발의안에 동의, 철도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명확화 필요
경기도	◦ 노인교통비 지원 제도 신설 시 지원대상 노인의 연령, 지원 교통비의 비율 및 금액의 적정성 및 재원부담대책, 교통이용권 발급 방식, 운영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 선행 후 법 개정 논의 필요
의정부시	◦ 경로우대 대상 연령을 65세 → 70세로 상향 필요,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방비의 비율(국비 40~90%) 부담하도록 명시할 필요
한국노인 종합복지 관협회	◦ 노인에게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 보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전국버스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 대중교통을 할인받는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방식과 같이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노인에게 직접 지원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 타당

1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이성윤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노인가구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7조의5(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화재 또는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u> <u>1. 응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u> <u>2.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u> <u>3. 안전교육 제공</u> <u>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u>

	②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주요 검토사항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연락이 가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 참고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을 통해 노인(독거노인·노인부부·조손가구) 263,390명, 장애인 12,656명 등 총 276,046명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2025년 5월 기준), 사업예산은 2025년 기준 310억 9,800만원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현황 >

(기준: 2025. 5. 31. /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
합 계 (A+B)	129,851	173,842	238,806	268,505	276,046
노인(A)	121,707	164,796	227,328	256,105	263,390
1인 가구(독거노인)	121,707	164,796	227,328	153,411	181,665
노인 2인 가구	—	—	—	10,775	12,753
조손가구	—	—	—	238	279
확인불가	—	—	—	91,681	68,693
장애인(B)	8,144	9,046	11,478	12,400	12,656

- * 2023년 7월부터 노인 대상자 범위를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로 확대
- * 2024년 2월부터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노인 대상자를 분류(기존 대상자 중 일부는 확인 불가)
- * 시스템상 장애인은 별도 구분값이 없어 1인 가구 여부 등 확인 불가
- * 자료: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 산	21,167	25,110	30,064	29,267	31,098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동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³³⁾, 「장애인복지법」 제24조³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³⁵⁾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 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업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³⁶⁾.

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4)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6) 「2025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로 노인가구,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함께 노인가구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동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응급관리요원의 확충(2024년말 기준, 응급관리요원 1명당 347명 관리)과 처우개선 등 관련 인프라의 개선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봄. 그 외,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가구로 독거노인가구 등을 명시할 필요도 있어 보임.

* 2024년 12월 기준 신규 응급관리요원 94명 중 이직자는 12명으로 이직율이 12.8%임.

< 지역별 응급관리요원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명)

시도	응급관리요원	시도	응급관리요원	시도	응급관리요원
서울특별시	8	울산광역시	16	전북특별자치도	71
부산광역시	47	세종특별자치시	5	전라남도	108
대구광역시	34	경기도	101	경상북도	61
인천광역시	18	강원특별자치도	73	경상남도	60
광주광역시	20	충청북도	40	제주특별자치도	12
대전광역시	26	충청남도	66	계	766

* 자료: 보건복지부

< 2022~2024년 신규 응급관리요원 채용현황>

(단위: 명)

연도	채용인원	이직	이직률	근무 중	미채용
2022	162	62	38.3	100	6
2023	102	11	10.8	91	15
2024	94	12	12.8	82	9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노인가구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11.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이재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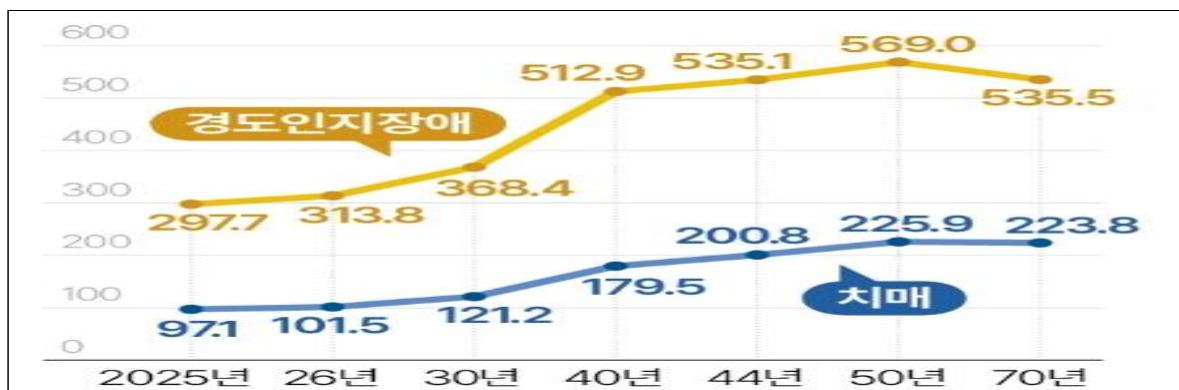
- 개정안은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한다.</u>

나. 주요 검토사항

-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금년도 치매환자 수는 97만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치매 등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는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치매 환자 수 전망>



* 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보건복지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4,44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³⁷⁾.

37)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22. 4. 20.)에서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등을 권고한 바도 있음.

< 요양보호사 월평균 근무시간·임금(2022.4.~6.) >

(단위: 시간, 만원)

구 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평 균
월평균 근무시간	92.6	167.4	156.8	160.3	100.5
월평균 임금	117.0	213.3	199.0	218.8	127.1
시간당 임금	1.26	1.27	1.27	1.36	1.26

* 자료: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기요양요원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음.

< 요양보호사 수급차 전망(2023~2028) >

(단위: 명, 가구,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수요	566,954	610,042	666,513	716,501	758,775	803,161
공급(근무)	640,116	652,902	662,751	673,054	679,755	686,427
수급차	73,162	42,860	△3,762	△43,447	△79,020	△116,734

* 자료: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건강보험연구원, 2023)

-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안과 같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023년 제93차 유엔(UN) 총회에서는 결의안을 통해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기념하고,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 경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유엔(UN) 총회 결의안 주요 결의사항>

-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공식 지정한다.
- 모든 유엔 회원국, 유엔 체계 내 조직, 기타 국제·지역·국가 조직 및 이해관계자(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 개인 포함)는 매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기념하고,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 경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 유엔 여성기구(UN-Women),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효과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도록 한다.
- 이 결의안에 따른 모든 활동의 재정은 자발적인 기부(민간 부문 포함)로 충당할 것을 강조한다.
- 사무총장은 유엔 체계 내 모든 관련 기관과 회원국에게 본 결의안을 공유하고,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 기념을 장려하도록 요청한다.

- 이와 관련하여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돌봄의 날’이 지정되는 경우, 금번 개정의 취지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6월 현재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념일 또는 기념주간으로 지정된 사례는 145건이며(참고자료6), 그 중 희귀질환 극복의 날(2월의 마지막 날), 암 예방의 날(3. 21.), 보건의 날(4. 7.) 등 총 30건이 보건복지부 소관임(질병관리청 소관 2건 제외).

* 행안부(14건), 여가부(13건), 문체부(13건), 농식품부(9건), 고용부(7건), 해수부(7건), 중기부(5건), 식약처(6건), 기타 부·처·청(4건 이하) 지정 운영 중

□ 그외,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³⁸⁾에 따르면, 의의나 성격이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된 경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³⁹⁾에 따라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관련단체에서 자체기념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돌봄인력 관련 기념일 현황 >

돌봄인력	자체기념일	지정경위	비 고
사회복지사	3월 30일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공포일(3.30.)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념	법정 기념일은 아님
간호사	5월 12일	◦ 국제간호협의회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로 지정(5.12.)	
물리치료사	9월 8일	◦ 세계물리치료연맹에서 국제 물리치료의 날로 지정(9.8.)	
작업치료사	10월 27일	◦ 세계작업치료연맹에서 국제 작업치료의 날로 지정(10.27.)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대한 발의 취지에 공감하나 특정 직역을 위한 기념일 지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 기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39)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 기준”에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우리부 관련 다양한 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을 위한 기념일은 존재하지 않음
행정 안전부	◦ 개별 법률 및 시행령에 ‘요양보호사의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 검토하여 추진 필요 ◦ 또한,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면밀 검토 필요
국민건강 보험공단	◦ 특정 직종에 대한 법정 기념일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한국노인 장기요양 기관협회	◦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들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추가 의견으로는 2008.7.1.이 장기요양의 시작이므로 ‘요양보호사의 날’도 좋지만 ‘장기요양인의 날’로 지정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됨
한국노인 복지 중앙회	◦ 노인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사료됨 ◦ 다만, 요양보호사로만 한정하여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특정된 요양보호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인의날’ 혹은 ‘노인장기요양의날’로 기념일 제정 의견을 제시함
한국재가 장기요양 기관협회	◦ 장기요양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 직종만을 직시한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장기요양에 종사하는 타직종의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음
한국요양 보호사 협회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식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될 것으로 보임
전국요양 보호사 협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작된 7월 1일은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생긴날로, 이를 요양보호사의날로 지정한다면 전국의 65만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필수인력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임.
대한요양 보호사 협회	◦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정하여야 함

12.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전진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7조의5(노인 주치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노인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주요 검토사항

-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지속으로 2024년 12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 인구의 증가 및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는 2019년 35조 8,555억원에서 2023년 48조 9,011억원으로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2019-2023년 전체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9년 대비 2023년 증감률
전체 진료비	862,634	868,278	957,221	1,058,586	1,108,029	28.4%
65세 이상 진료비	358,555	376,644	415,042	457,647	489,011	36.4%
65세 이상 진료비비율	41.6%	43.4%	43.4%	43.2%	44.1%	6.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2021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고령 환자 중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복용하는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상당히 높고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다약제 복용 등 과잉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고, 중복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치의 제도: 특정 의사를 담당 주치의로 등록하여 국민이 건강 문제로 의료이용시 주치의를 1차적으로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고 필요 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제도

□ 다만,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2024. 12.)한 가운데, 노인주치의 제도의 효과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한정된 의료인력 수급과 함께, 주치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적정범위,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등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주치의 제도 입법례를 보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이 운영중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⁴⁰⁾에 근거하여 시행중이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제도는 2022년 「구강보건법」 제2조 개정⁴¹⁾에 따라 추진중에 있음.

4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구강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6. 12. 2., 2022. 6. 10.>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3. 6. 13.>

4.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시행일: 2025. 6. 14.] 제2조

< 주치의 제도 국내 입법례 >

구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근거법률	- 「구강보건법」 제2조 (2012.6.10. 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5.12.29. 제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지원대상	- 시범사업 대상 지역 (9개)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신규 참여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치매 환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	- 고혈압(질병코드 I10~13, I15), 당뇨병(E10~14) 으로 진단된 환자

*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연평균(2026~2030) 63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국민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의료계·환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관련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 - 다만, 노인을 비롯한 국민에게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제공하기 위한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검토 중으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의료계·환자 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노인 질환 특성에 따라 포괄적 접근이 추진되고 있는 현 사업을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중앙 치매 센터	- 주치의제도가 부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만을 구분하여 주치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령기준, 관리 질환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우선 확립되어야 함 - 또한,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 고려 시,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은 전문가 간 책임 문제, 노인의 진료선택권 침해 등 여러 혼란을 야기할 우려
대한 의사 협회	- 의원과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상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 환자의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각 전문과 간의 형평성 문제 및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노인 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도입보다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및 노인의학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고령 환자의 진료권·건강권을 보장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등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대한 치매 협회	- 주치의 제도의 대상의 범위가 너무 크고 기준이 모호함.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주치의제도의 대상범위가 넓어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의료시스템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매우 큼. - 이미 유사한 취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다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 없이 선불리 노인주치의 제도를 신설할 경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됨.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사업, 재택의료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대한 간호 협회	- 노인의 건강관리는 통합적이고 지속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담당 주치의가 맞춤형 진료제공 및 예방, 치료,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에 동의 - 다만,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체계 구축 지향을 위해 단일직종(의사) 중심이 아닌 다직종 팀 기반의 접근 필요.
대한 한의사 협회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찬성 - 노인의 의료 수요와 치료효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한의사 주치의 등 한의약 활용이 필요

문 의 처
02)6788-5499

【참고1】	노인복지주택 현황 (2024.12.31. 기준 / 보건복지부)
-------	------------------------------------

○ 전국 43개소 9,231세대 운영 중(정원)

시도	시군구	시설명	입주세대수	분양	임대	혼합	
						분양	임대
계		43개소	9,231	3,735	3,560	1,086	850
서울	종로구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	164	-	164	-	-
서울	중구	서울시니어스타워 (주)서울본부	144	-	144	-	-
서울	중구	정동 상림원	98	98	-	-	-
서울	용산구	하이원빌리지	114	-	114	-	-
서울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239	-	-	42	197
서울	은평구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137	137	-	-	-
서울	마포구	상암카이저펠리스	240	240	-	-	-
서울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본부	350	-	-	189	161
서울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강서본부	142	-	-	95	47
서울	강남구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강남본부	95	-	-	64	31
서울	강남구	더시그넘 하우스	170	-	170	-	-
서울	강동구	후성누리움	51	51	-	-	-
부산	수영구	흰돌실버타운	291	-	291	-	-
인천	서구	청라백세실버타운	58	-	58	-	-
인천	서구	마리스텔라	264	-	264	-	-
인천	서구	더시그넘하우스 청라	131	-	131	-	-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빌리지	240	-	240	-	-
세종	세종시	밀마루복지마을	100	-	100	-	-
경기	수원시	유당마을	261	-	261	-	-
경기	수원시	광고아르데코	261	261	-	-	-
경기	수원시	광고두산위브	547	547	-	-	-
경기	용인시	삼성노블카운티	555	-	555	-	-
경기	용인시	스프링카운티자이	1345	1,345	-	-	-
경기	성남시	성남시아리움(독거노인복지주택)	19	-	19	-	-
경기	성남시	서울시니어스타워(주)분당본부	254	-	-	177	77
경기	성남시	정원속궁전	170	-	-	150	20
경기	성남시	더 헤리티지	390	390	-	-	-
경기	남양주시	에버그린센터	51	-	51	-	-
경기	남양주시	수동시니어타운	136	-	136	-	-
경기	하남시	벽산블루밍 더클래식	220	220	-	-	-
경기	오산시	블레스힐링타운	30	-	30	-	-
경기	안성시	안성크리스찬휴빌리지	76	-	76	-	-
경기	가평군	청심빌리지 실버타운	155	-	155	-	-
경기	가평군	생명의빛홈타운	36	-	36	-	-
강원	동해시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	155	-	155	-	-
충북	청주시	청주아침햇살실버타운	30	-	30	-	-
충남	공주시	공주원로원노인복지주택	100	-	100	-	-
전북	전주시	옥성골든카운티	446	446	-	-	-
전북	김제시	부영노인전용주택	150	-	150	-	-
전북	정읍시	내장산실버아파트	147	-	-	10	137
전북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고창타워	539	-	-	359	180
경북	김천시	월명성모의집노인복지주택	100	-	100	-	-
경남	양산시	에코뷰카운티(실버타운)	30	-	30	-	-

【참고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상세현황(2020~2024) (자료: 보건복지부)
-------	---

(단위: 명, %)

구분	신 고 자	2020	2021	2022	2023	2024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5	23	18	48	15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20	11	20	18	11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67	246	298	282	283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4	6	9	2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92	70	59	58	4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46	326	211	167	179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25	10	9	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6	45	42	48	41
	119 구급대의 대원	5	1	1	2	2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1	1	-	1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5	7	6	4	2
	응급구조사	1	-	-	-	-
	의료기사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89	25	29	13	8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8	8	9	5	9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6	83	155	64	60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⁴²⁾	-	-	261	313	348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	-	-	6	3
	소계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 비율)	939 (15.0)	860 (12.7)	1,125 (16.5)	1,044 (14.9)	1,004 (14.0)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450	361	334	344	289
	학대행위자 본인	6	8	4	7	2
	친족	531	549	507	505	448
	타인	216	197	118	190	154
	관련기관 (경찰관, 기타 관련시설 종사자 등)	4,117	4,799	4,719	4,935	5,270
	소계 (신고자 중 비신고의무자 비율)	5,320 (85.0)	5,914 (87.3)	5,682 (83.5)	5,981 (85.1)	6,163 (86.0)
합 계		6,259	6,774	6,807	7,025	7,167

42)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의 경우, 「노인복지법」 개정(2021.12.21.)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노인학대 현황을 적용함(시행: 2022.3.22.).

[참고3]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

[별표]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 절차(사용 전 필수 절차)

1. 환자 상태 확인

- 과거력, 투약력,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심리 및 정서 상태,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여 환자의 문제행동 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2.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시도

- 환자의 문제행동 원인*이 파악되었으면,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 의학적 문제(수분과다, 탈수, 영양부족, 감염, 약물독성이나 부작용, 실금 등), 가려움증, 인지손상, 통증, 불안, 과도한 움직임 등
- 환자의 문제행동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 * 근본적인 건강문제의 치료(구강영양증진, 약물중재, 안위증진, 행동관리 등), 환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배변, 음식, 수분, 수면, 안위, 통증 등) 등
- 신체 억제대를 대신한 방법이 효과가 없을 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다.

3. 신체 억제대 사용 처방

- ① 의사는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 사용부위, 신체 억제대 종류(유형)*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1일 1회’ 처방하며, 처방양식은 일반적 약물이나 처치 등 처방방법에 준한다.
 - * 손목 · 발목 · 손장갑 · 조끼 억제대, 끈 · 벨트, 휠체어 안전벨트 등
- ② ‘필요시처방(p.r.n)’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환자의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4. 신체 억제대 사용 설명 및 동의서 수령

- ①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환자의 인지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 ②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서(“별지” 참고)에는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 사용부위, 억제대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환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1일 내(24시간)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내 서면 동의로 전환해야 한다.
 -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바뀌는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참고4】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 신체적 제한에 관한 외국 입법례 및 억제대 사용 현황 (2024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	--

구분	내용
일본 (신체구속제로 가이드라인)	◦ 고령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 구속이나 기타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신체억제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
미국 (너싱홈개혁법)	◦ 억제대는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최소 침해의 원칙하에 시행 -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 목표로 한 제도적 장치인 NHRA(너싱홈개혁법)를 통해 규제를 시행함
영국 (본인의사에 의해 허용)	◦ 본인의 의사에 의한 신체억제를 허용함 - 수용 가능한 억제 : 시설 입소 노인이 보다 안전한 느낌을 갖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능 - 수용 불가능한 억제 :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거나 몸을 구속하는 것
네덜란드 (신체억제대안)	◦ 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국립 장기요양전문센터를 통해 86개의 신체억제의 대안(Bundle of alternatives for more freedom in healthcare)을 제시
유럽 평의회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안)	◦ 본인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하며,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만 시행
WHO 정신보건, 인권에 관한 자료집	◦ 격리와 강박이 정신질환자 자신과 환자 자신과 타인에게 막대한 위협을 방지할 유일한 수단일 때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허가될 수 있음.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 협약	◦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는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 활용

【참고5】	주요국의 대중교통수단 할인제도 현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2022년 Vol.4 제21호)
-------	--

구분	대중교통수단	대상자	할인혜택	비고 (재정부담 등)
미국	뉴저지	기차, 버스, 지하철 등	버스 50%, 지하철 30% 할인	• 중앙정부 및 주정부 예산 • 노인 교통서비스 지원은 노인 복지부가 책임
	뉴욕	지하철, 시내버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메릴랜드	버스, 철도,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국	잉글랜드	버스	런던 거주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지방정부에서 집행 • 중앙정부 일부 보전
		트램, 지하철		
		국가철도	런던 거주 66세 이상 및 장애인	• 지방정부(런던교통국)
			런던 거주 60세 이상	
	스코틀랜드	버스	스코틀랜드 거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스코틀랜드 교통부 계약에 따라 비용의 56.5% 집행
			스코틀랜드 거주 5~21세	• 스코틀랜드 교통부
프랑스 (일드프랑스)	지하철, 버스, 트램, 고속전철	퇴직자(월소득 약 296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장애인, 재향군인	월 정기권 100% 무료	• 지방정부
		62세 이상	월 정기권 50% 할인	• 일드프랑스 광역교통조합
		실업수당 수혜자 및 가족 연대수당 수혜자	주간 정기권 75% 할인	• 일드프랑스 광역교통조합 • 일드프랑스 광역도
일본 (도쿄도)	버스, 지하철 일부 (도쿄도 교통국 운영 한정)	주민세 납부 70세 이상	연간 무제한 이용	• 지방정부
		주민세 면제 70세 이상 (저소득자)	연간 무제한 이용	
독일	철도	60세 이상	50% 할인	• 지방정부
	버스	60세/65세 이상	50% 할인 (남성 65세, 여성 60세)	• 지방정부

【참고6】	법정기념일 현황 (개별법률: 145개) (기준: 2025. 6.31. / 자료: 행정안전부)
--------------	---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한국수어의 날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4	한국수어 주간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유산 방재의날	2.10.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6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7	국립공원의 날	3. 3.	환경부	자연공원법
8	여성의 날	3. 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9	흙의 날	3.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10	의용소방대의 날	3.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2	결핵 예방의 날	3.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3	수산인의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14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5	건강주간	4.7.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6	전기의 날	4.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25.1.10. 시행예정
17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18	도시농업의 날	4.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9	도서관의 날	4.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0	도서관 주간	4.12.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1	국민안전의 날	4.16.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2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3	장애인 주간	4.20.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4	자전거의 날	4.22.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5	새마을의 날	4.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6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4.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27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	4.28.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청소년의 달	5월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9	가정의 달	5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30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1	씨름의 날	음력 5.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32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3	어린이주간	5.1.~5.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4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5	유권자의날	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6	유권자 주간	5.10.부터 1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7	바다식목일	5.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38	한부모가족의 날	5.10.	여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39	양잠인의 날	5.10.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0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1	입양주간	5.11.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2	식품안전주간	5.7.~5.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3	식품안전의 날	5.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4	가정의 날	5.1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45	발명의 날	5.19.	특허청	발명진흥법
46	세계인의 날	5.20.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7	세계인주간	5.20.부터 1주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8	문화다양성의 날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9	문화다양성 주간	5.21.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50	방재의 날	5.25.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1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52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53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4	해외파병용사의 날	5.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55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	환경부	환경교육법
56	국악의 날	6. 5.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57	구강보건의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58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59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60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61	해양조사의날	6.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62	선원의 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원법
63	전자정부의 날	6.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64	마약퇴치의 날	6.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65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6	사회적기업 주간	7.1.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7	협동조합의날	7월 첫째 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68	협동조합 주간	협동조합의 날 이전1주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69	여성기업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70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1	방위산업의 날	7. 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2	인구의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3	연안안전의 날	7.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4	연안안전점검 주간	7월 셋째 주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5	유엔(UN)군 참전의 날	7.27.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76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77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78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 날	8.14.	여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79	양성평등주간	9.1.~9.7.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0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9.1.~9.7.)중 하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1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82	여권통문의 날	9.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83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84	지식재산의 날	9.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기본법
85	고향사랑의 날	9. 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86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87	사회복지주간	9.7.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88	곤충의 날	9.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법
89	생명나눔 주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0	숙련기술인의 날	9.9.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91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2	자살예방 주간	9.10.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3	해양경찰의 날	9.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94	산업단지의 날	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5	성매매 추방주간	9.19.~9.25.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96	연안정화의 날	9월 셋째 토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97	청년의 날	9월 셋째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98	청년주간	청년의날부터 1주간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99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100	조달의 날	9.30.	조달청	조달사업법
101	개인정보보호의 날	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102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3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4	동물보호의 날	10.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105	세계 한인의날	10. 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06	세계한인주간	10.3.~10.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07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108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09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0	여성어업인의날	10.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11	스포츠의 날 (前체육의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112	여성농업인의 날	10.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
113	호스피스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1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115	회계의 날	10.3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116	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7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진흥법
118	손상예방의 날	11. 1.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5.1.24. 시행예정
119	수소의 날	11. 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0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1	한글 점자 주간	한글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2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3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의 날 이전1주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4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소방기본법
125	보행자의 날	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126	유엔참전용사 국채추모의날	11.1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2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28	약의 날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129	아동학대예방의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0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1	김치의 날	11.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132	민원의 날	11.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3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34	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5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136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37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38	자원봉사주간	12.5.부터 1주일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9	국가유산의 날	12. 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기본법
140	기부의날	12월 둘째 월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1	기부주간	12월 둘째 주간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2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2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화장품의 날	9.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144	의료기기의 날	5.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145	국제개발협력의 날	11.25.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